

#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 협약서

SH공사(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등),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중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활용의 범위 )

재활용의 범위는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발주자의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에 한한다.

## 제3조(협약기간 등)

- ① 협약기간은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협약조건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협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경우 협약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발주자가 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와 협약을 추가(별도)로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 제4조(협약조건)

- ① 발주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현장 위치를 감안 근

거리에 위치하거나 즉시 위탁처리가 가능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발주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제품 생산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다른 용도(매립등)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 수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아니되며, 수행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등)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로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건설폐기물이 10톤(9톤 미만일 경우) 인·인수에 관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확인된 물량(배출현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발행된 계량증명서등)에 의하여 정산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필증과 폐기물 재활용신고필증을 등록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자로서, 국립기술품질원의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에서 우수 재활용제품에 부여하는 인증규격인 GR마크를 획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공동도급협정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 제5조(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등)

① 현장에서 절삭, 덩어리등의 상태로 발생된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

트)에 대하여 무상으로 처리하며(발주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이외 불순물의 혼입반입은 불가한다.

② 건설폐기물(페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를 위한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은 발  
주자가 별도 계상하며, 발주자가 수집·운반업체를 지정한다.

제6조(효력)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  
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에 조정한다.

SH공사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산부생 보호한다

2015년 12월

"발주자"

SH공사 사장



"계약상대자"

한발산업(주) 대표이사  
이 호 준



서울아스콘(주) 대표이사  
박 창 호



(주)서원아스콘 대표이사  
송 인 숙, 이 호 준



세진아스콘(주) 대표이사  
김 정 선



(주)드림아스콘 대표이사  
서 정 윤

